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1263
----------	-------

발의연월일 : 2025. 7. 3.

발 의 자 : 박해철 · 이재관 · 김남근
권향엽 · 윤건영 · 김영환
이용우 · 박지원 · 서영교
황명선 · 이광희 · 이병진
송재봉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노동조합 대표자가 회계연도마다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공표하고, 조합원이 조합비 사용 내역을 확인하고 요청 시 열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조합비 사용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조합원의 감시·통제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임. 한편, 행정관청이 요구할 경우 노동조합이 결산자료와 운영상황을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음.

문제는, 해당 규정에 따라 행정관청이 노동조합에 결산자료 제출을 반복적으로 요구하거나, 운영상황을 광범위하게 수집하려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임. 이러한 행위는 노동조합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침해할 소지가 있음.

또한, 조합원이 열람할 수 있는 ‘결산결과 및 운영상황’의 범위가 법

적으로 명확하지 않음. 이로 인해 일부 현장에서는 조합원과 대표자
간에 갈등이나 오해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조합원이 노동조합에 대해서 열람을 요구할 수 있는 결산결과
와 운영상황 등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노동조합의 자주적 운영을 저
해할 수 있는 노동조합의 행정관청에 대한 결산결과와 운영상황 보고
의무를 삭제하여, 노동조합의 자주성, 민주성, 투명성을 더욱 보호하고
확대하고자 함(안 제26조 등).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운영상황의 공개)

- ② 제1항의 열람 대상에는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에 관한 증빙자료를 포함한다.

제27조를 삭제한다.

제96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1항2호를 삭제한다.

제96조(과태료)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第26條(運營狀況의 公開) (생 략)</u> <u><신 설></u> <u>第27條(資料의 提出) 勞動組合은</u> <u>行政官廳이 요구하는 경우에는</u> <u>決算結果와 運營狀況을 報告하</u> <u>여야 한다.</u> <u>第96條(過怠料) ① (생 략)</u> 1. (생 략) 2. <u>第27條의 規定에 의한 보고</u> <u>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u> <u>보고를 한 者</u> 3. (생 략) ② · ③ (생 략)	<u>제26조(운영상황의 공개) ① (현행</u> <u>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u> <u>② 제1항의 열람 대상에는 결산</u> <u>결과와 운영상황에 관한 증빙자</u> <u>료를 포함한다.</u> <u><삭 제></u> <u>제96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u> 1. (현행과 같음) <u><삭 제></u> 3.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